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 분양안내(http://www.lottecastle.co.kr/)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 공급계약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 발표 후 계약안내문을 통한 별도 공지 예정)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체온 체크 시(열 화상 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체온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 전화(☎ 1566-198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8.19.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 1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7년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6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거

주자가 우선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6.23.)」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7.24. 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화성시 거주기간과 변경 후 해당구역(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화성시 우선공급 거주기간(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함.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화성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기준 화성시에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현행 법령 기준, 향후 관련법 개정 예정)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향후 관련법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020.09.01.(화)	2020.09.02.(수)	2020.09.03.(목)	2020.09.04.(금)	2020.09.10. (목)	2020.09.12.(토)~ 2020.09.17.(목)	2020.09.22.(화)~2020.09.27.(일)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내방접수 (10:00~16:00), 사전예약제 운영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주택과 - 34749호(2020.08.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48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5층 12개동, 총 999세대

[특별공급 417 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96 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00 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92 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9 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983	01	059.9951A	59A	59.9951	23.3828	83.3779	29.6713	113.0492	39.5405	90	9	9	18	3	39	51	4
		02	059.9952B	59B	59.9952	22.7182	82.7134	29.6714	112.3848	39.5406	42	4	4	8	1	17	25	1
		03	059.9984C	59C	59.9984	23.0992	83.0976	29.6730	112.7706	39.5427	45	5	5	9	1	20	25	2
		04	084.9964A	84A	84.9964	24.7628	109.7592	42.0362	151.7954	56.0179	528	53	53	106	16	228	300	23
		05	084.9935B	84B	84.9935	25.4873	110.4808	42.0347	152.5155	56.0160	179	18	18	36	5	77	102	7
		06	084.9935C	84C	84.9935	25.9306	110.9241	42.0347	152.9588	56.0160	73	7	7	15	2	31	42	3
		07	111.8909	111	111.8909	30.0225	141.9134	55.3372	197.2506	73.7431	42	-	4	-	1	5	37	2
	합 계										999	96	100	192	29	417	582	42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타입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리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용도별(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배분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라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 도 금 (60%)						잔 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1.01.08	2021.04.09	2021.08.09	2022.03.03	2022.05.09	2022.08.08	입주지정일
59.9951	59A	105동(1,3호) 106동(1,3호)	1층	4	231,826,000	174,174,000	406,0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2층	4	236,965,000	178,035,000	415,0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3~5층	12	246,672,000	185,328,000	432,0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6~10층	20	251,811,000	189,189,000	441,0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32,300,000
			11~20층	40	256,950,000	193,050,000	4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135,000,000
			21층 이상	10	262,089,000	196,911,000	459,0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59.9952	59B	105동(2호) 106동(2호)	1층	1	222,119,000	166,881,000	389,0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2층	1	227,258,000	170,742,000	398,0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3~5층	5	236,965,000	178,035,000	415,0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6~10층	10	242,104,000	181,896,000	424,0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11~20층	20	247,243,000	185,757,000	433,0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21층 이상	5	252,382,000	189,618,000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59.9984	59C	105동(4호) 106동(4호)	1층	2	226,116,000	169,884,000	396,0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2층	2	230,684,000	173,316,000	404,0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3~5층	6	240,962,000	181,038,000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6~10층	10	246,101,000	184,899,000	431,0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11~20층	20	251,240,000	188,760,000	440,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21층 이상	5	255,808,000	192,192,000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84.9964	84A	101동(1,3,4호) 102동(1,3호) 103동(1,3호) 104동(1,3호) 107동(1,3,4호) 108호(1,3,4호) 109동(1,3,4호) 110동(1,3,4호) 111동(1,2호)	1층	23	291,781,000	219,219,000	511,0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53,300,000
			2층	23	298,633,000	224,367,000	523,0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56,900,000
			3~5층	69	311,766,000	234,234,000	546,0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6~10층	115	318,618,000	239,382,000	558,0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11~20층	227	324,899,000	244,101,000	569,0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170,700,000
			21층 이상	71	331,751,000	249,249,000	581,0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58,100,000	174,300,000
84.9935	84B	101동(2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107동(2호) 108동(2호) 109동(2호) 110동(2호)	1층	7	283,787,000	213,213,000	497,0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49,100,000
			2층	8	290,639,000	218,361,000	509,0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3~5층	24	303,772,000	228,228,000	532,0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59,600,000
			6~10층	40	310,624,000	233,376,000	544,0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11~20층	79	316,905,000	238,095,000	555,0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21층 이상	21	323,757,000	243,243,000	567,0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70,100,000
84.9935	84C	102동(4호) 103동(4호) 104동(4호)	1층	3	288,355,000	216,645,000	505,0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51,500,000
			2층	3	294,636,000	221,364,000	516,0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54,800,000
			3~5층	9	308,340,000	231,660,000	540,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62,000,000
			6~10층	15	315,192,000	236,808,000	552,0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11~20층	30	321,473,000	241,527,000	563,0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21층 이상	13	328,325,000	246,675,000	575,0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172,500,000
111.8909	111	112동(1,2호)	1층	2	407,123,000	305,877,000	713,0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213,900,000
			2층	2	415,688,000	312,312,000	728,0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72,800,000	218,400,000
			3~5층	6	432,818,000	325,182,000	758,0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227,400,000
			6~10층	10	441,954,000	332,046,000	774,0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232,200,000
			11층 이상	22	450,519,000	338,481,000	789,0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236,7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면적 합산 시 소수점 4자리에서 단수 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중도금 납부일정은 시행자, 금융기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품목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입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여부, 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에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59C	84A	84B	84C	111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	7	2	1	-	12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6	3	1	-	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7	2	1	-	12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6	2	1	-	12
	장애인	경기	3	1	1	14	4	1	-	24
		서울	1	1	-	7	2	1	-	12
		인천	1	-	1	6	3	1	-	1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 (50%)		5	2	3	27	9	4	2	5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4	2	2	26	9	3	2	48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4	6	7	80	27	12	-	146
		일반공급(25%)	4	2	2	26	9	3	-	4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1	1	16	5	2	1	29
합 계			39	17	20	228	77	31	5	41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table>
<tr><td></td><td>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td></tr>
</tabl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9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장기 복무 군인 제외)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 되었을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100 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269호(2018.05.08.))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화성시 및 경기도에 우선공급하며, 기타 수도권에 50%를 공급함.
- 화성시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남는 경우 기타 경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함.
-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9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전 배우자 였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신청자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29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건설지역인 화성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노부모특별공급의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화성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본 아파트의 건설지역인 화성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제한 기간 적용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점제(75%) / 추첨제(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①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에 속한 자. ②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점제 30% / 추첨제 7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①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에 속한 자. ②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국 모든 지역 주택 당첨사실 해당) 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 못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대상자	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별표2))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Ⅳ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9.01.(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정보취약 계층 등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해당 (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거주자)	2020.09.02.(수) 08:00~17:30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기타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 수도권 거주자)	2020.09.03.(목) 08:00~17:30	
	2순위		2020.09.04.(금)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민등록증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분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입증서류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본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 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성,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부양가족 가점 산정 유의사항

• (적용대상)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 (본인은 제외)

1)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함)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불인정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1년 등재 + 계속해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해당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 처리일

③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④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업자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택형(타입)을 기준으로 순위내 경쟁이 있었으나 부적격자 또는 계약포기로 발생한 미계약분 등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은 경우 및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세대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은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②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③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화성시 거주신청자가 기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자만 가능 - 신혼부부 자격 참조)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V 당첨자 발표 및 서류안내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0.09.10.(목)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09.12.(토) ~ 2020.09.17.(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0)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일시 - 2020.09.22.(화) ~ 2020.09.27.(일)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 09.10.(목) ~ 2020.09.19.(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9.10.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 (서약서로 대체)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는 생략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인터넷 청약자는 계약시 제출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인터넷 청약자는 계약시 제출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10년 이상 군 복무기간이 명시 된 것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해당기관 장의 추천서는 생략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번호, 과거변동 내역 포함 하여 발급)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O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 서류에 한함)

				배우자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무직자인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서류에 한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출생일자 관련 확인 필요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이후 발행분해 한하며, 견본주택 접수시에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 성명, 주민번호 전체,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①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	①국민연금 관리공단 ②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소득금액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①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성명, 주민번호 전체,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O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적격 통보를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받은 자					- 무허가건물확인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야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Ⅵ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9.22.(화) ~ 2020.09.27.(일)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0)

※ 계약 일정 및 시간대, 예약 방법 등 계약관련 세부사항은 당첨자 발표후 당사 홈페이지 및 계약안내문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 분양일정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 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일체(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② 계약금 입금증(납부영수증) (※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④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④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불가 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⑦ 대리인의 인장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광주은행	1107 - 021 - 038230	신영부동산신탁(주)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 이체 및 무통장 입금, 현장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 : 101동 503호 홍길동의 경우 '01010503홍길동' 이라고 기재]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은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한 이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신 납부하는 기한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그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

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한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8.09.13. 후속대책으로 발표된 『 주택시장 안정대책 』 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단,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만 60세 이상 부모 별거 봉양 등) 등의 예외 허용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 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전쟁, 천재지변, 기상이변, 미세먼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

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Ⅶ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의 납부 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면적 : ㎡, 금액 : 원)

구분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비고
		계약 시	2021.09.06	입주지정일	
59A	21,740,000	2,174,000	4,348,000	15,218,000	
59B	20,900,000	2,090,000	4,180,000	14,630,000	
59C	23,540,000	2,354,000	4,708,000	16,478,000	
84A	24,930,000	2,493,000	4,986,000	17,451,000	
84B	23,110,000	2,311,000	4,622,000	16,177,000	
84C	25,850,000	2,585,000	5,170,000	18,095,000	
111	29,740,000	2,974,000	5,948,000	20,818,000	

※ 확장 선택형에 따라 에어컨 및 조명기구, 전기기구 등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급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093958**	**신영부동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5동 102호 당첨자의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50102홍길동'으로 기재)
- 기타 가전기기 및 마감재/가구 선택 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2005년12월2일 개정시행)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단,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는 시공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세대(비확장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 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햐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 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시스템 에어컨

1.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

구분	선택1(부분)		선택2(전실)		비고
	설치위치	금액	설치위치	금액	

		일반형	공기청정형		일반형	공기청정형	
59A	거실+안방 (실내기 2대)	3,300,000	4,0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5,960,000	7,340,000	
59B	거실+안방 (실내기 2대)	3,300,000	4,00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6,460,000	7,840,000	
59C	거실+안방 (실내기 2대)	3,290,000	3,990,000	거실+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6,460,000	7,840,000	
84A	거실+주방+안방 (실내기 3대)	5,610,000	6,650,000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5대)	8,180,000	9,890,000	
84B	거실+주방+안방 (실내기 3대)	5,580,000	6,620,000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5대)	8,430,000	10,140,000	
84C	거실+주방+안방 (실내기 3대)	5,580,000	6,620,000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실내기 5대)	8,430,000	10,140,000	
111	거실+주방+안방 (실내기 3대)	5,700,000	6,740,000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침실4 (실내기 6대)	10,300,000	12,35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거실 및 안방의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공급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093958**	**신영부동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5동 102호 당첨자의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50102홍길동'으로 기재)
- 기타 가전기기 및 마감재/가구 선택 품목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가전기기 및 마감재/가구 선택 품목

1. 가전기기

품목	제조사	적용주택형	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비고
				계약시	2021.09.06	입주지정일	
하이브리드쿡탑	쿠첸	전 주택형	500,000	50,000	100,000	350,000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삼성전자	전 주택형	5,390,000	539,000	1,078,000	3,773,000	
빌트인 김치냉장고+수납장 특화	삼성전자	전 주택형	1,490,000	149,000	298,000	1,043,000	
클린에어시스템	OEM	전 주택형	790,000	79,000	158,000	553,000	공기청정 전열교환환기시스템 및 현관 에어샤워시스템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84형 이상	890,000	89,000	178,000	623,000	
빌트인 와인냉장고	윈텍	84형 이상	790,000	79,000	158,000	553,000	

※ 본공사시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마감재 / 가구선택

구분	적용주택형	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비고
			계약시	2021.09.06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전 주택형	1,600,000	160,000	320,000	1,120,000	
바닥 타일 (거실,주방,복도)	59A / 59B / 59C	1,990,000	199,000	398,000	1,393,000	
	84A / 84B / 84C	2,490,000	249,000	498,000	1,743,000	
	111	2,990,000	299,000	598,000	2,093,000	
안방붙박이장 (수납형)	59A / 59B / 59C	2,490,000	249,000	498,000	1,743,000	
안방붙박이장 (수납형 or TV형)	84A / 84B / 84C	2,990,000	299,000	598,000	2,093,000	
	111	3,490,000	349,000	698,000	2,443,000	
침실2 붙박이장	59A / 59B / 59C	690,000	69,000	138,000	483,000	
	84A / 84B / 84C	840,000	84,000	168,000	588,000	
	111	990,000	99,000	198,000	693,000	
거실 스타일업 패키지 (거실천정간접조명, 거실벽체시트판넬+타일)	59A	1,490,000	149,000	298,000	1,043,000	
	59B / 59C	1,590,000	159,000	318,000	1,113,000	
	84A / 84B / 84C	1,890,000	189,000	378,000	1,323,000	
	111	1,990,000	199,000	398,000	1,393,000	
주방 스타일업 패키지 (와이드씽크볼,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체)	59A / 59B / 59C	1,290,000	129,000	258,000	903,000	
	84A	1,390,000	139,000	278,000	973,000	
	84B / 84C	1,490,000	149,000	298,000	1,043,000	
	111	1,490,000	149,000	298,000	1,043,000	
퓨어 패키지 (의류관리기, 살균기, 수납장)	84A	2,190,000	219,000	438,000	1,533,000	
	84B / 84C	1,790,000	179,000	358,000	1,253,000	기존 복도 팬트리 공간에 설치됩니다
	111	2,090,000	209,000	418,000	1,463,000	침실3 복도팬트리+알파룸 옵션 선택시 설치가능
홈오피스형 안방 드레스룸	84A	1,290,000	129,000	258,000	903,000	3연동중문 + 서재형시스템가구+드레스룸
	111	1,190,000	119,000	238,000	833,000	3연동중문 + 서재형시스템가구
복도팬트리+알파룸	111	1,490,000	149,000	298,000	1,043,000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부위는 홈페이지 상품안내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가전기기 및 마감재/가구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기타 가전기기 및 마감재/가구 공급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465101-01-283992**	**롯데건설(주)**	계약자별 가상계좌 별도 안내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5동 102호 당첨자의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50102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Ⅷ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등)과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홈페이지 분양 안내상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마감확인을 위해 선행시공하며, 이후 노후화등에 따라 준공전 재시공 후 인도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에 의하여 대지경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 후 개별공지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공용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방음벽 유무 및 형상과 높이, 인접단지와의 경계부 마감계획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연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 및 변경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 변경시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변경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동간거리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자전거보관소, 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가스정압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의 일부 제한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출입구 문주, 동 출입구 캐노피, 단지 내 도로 및 공공보도 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 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지하철역, 단지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 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화성반월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 중학생은 기산중학군(화성반월중, 기산중)에 배치할 예정이며, 향후 배정 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해당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배정됩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시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네이밍 포함) 및 동명칭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주동 Core 형태에 따라 엘리베이터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시공 시 품질개선 및 설계도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사항에 따르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계약서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간섭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사항

구 분		설 계 공 지 내 용
공통	도로 및 기반시설	당 현장의 남서측에는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고 이 공원은 단지내 소유공원이 아니며,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입주 후 인접단지의 개발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 채광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주변도로	단지 남측 25m도로의 경우 10m폭의 완충녹지와 공공공지가 단지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완충녹지변에는 당 단지측으로 방음벽이 설치되며 단지 출입구와 공공공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단지주변시설	단지 남서측에 근린공원이 조성예정이며, 공원과 단지내 동선이 연결되므로, 이에 따라 101동, 112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근린공원 내부에는 체육활동 위한 공간이 증설될 수 있으며 근린공원의 세부 계획은 인허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며 계획안 변경으로 인한 기능, 소음도 증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남측에는 완충녹지, 공공공지, 방음벽, 25m 도로 및 e편한세상 반월나노시티역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내의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동측에 완충녹지, SEMES(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6동, 107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북측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북측에는 당사업지와 하천 사이에 인접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 인접대지와 도로(반월길)를 연결하는 다리(기반시설)가 3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북측 및 북서측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가동으로 인해 단지 전체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사업부지 경계 북측의 단지외곽옹벽은 현황레벨, 공사여건 등 주변여건에 따라 옹벽의 구조형식, 높이, 재질, 디자인,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홍보물상의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 비행장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해 소음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대지지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휀스설치구간	당 현장은 인허가 도서에 담장계획도가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담장이 시공될 예정이나 공사 중 레벨 정리, 공간 계획에 의하여 선형이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투시형휀스 설치 구간의 담장은 롯데캐슬의 표준화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외에는 어떠한 진출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당 현장의 담장계획상 서측과 동측의 근린공원, SEMES, 소공원과 접한 면에는 생울타리(관목)가 설치되며 북측에는 대지경계를 따라 투시형휀스가 설치될 예정이고 단지 남측 전면의 완충녹지가 접한 면에는 방음벽 설치로 인하여 별도의 울타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또한 단지 남측의 근린생활시설이 공공공지와 접한 부분 및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는 진출입으로 인하여 별도의 울타리 설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인허가	당 현장은 2010년 7월 최초 사업계획승인 접수(2011년 7월 완료), 2011년06월15일 건축심의를 통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공동주택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모형, 카달로그, 각종광고지)	견본주택은 84A㎡, 84C㎡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 모형 등)과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입체도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계약전 홈페이지 내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어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음.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벽면 판넬 및 제작가구,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달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일부 분양홍보물은 가구, 가전 기기 등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이미지로 작성되었으며, 유상옵션 품목은 타입별, 주택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간지 및 유상옵션 품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로 만든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함.
	일부 분양홍보물은 가전 기기 등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이미지로 작성되었으며, 유상옵션 품목은 타입별, 형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품목의 차이가 있으니 공급간지 및 유상옵션 품목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CG, 일러스트, 이미지컷 및 개요 등)은 사전 홍보 시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음.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본 제작물은 광고·홍보물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본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문주 등의 기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개발계획, 주변건물 현황, 산, 조명, 외부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마감재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분양홍보물, 인쇄물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으로 함)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같은 자재라 할지라도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한 무늬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음.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음.
		화성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사업주체의 다른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 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음.
	기타사항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외관디자인	당 단지의 주동외관색채, 외벽줄눈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태양광집광판의 위치 및 각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 마감재, 단지 출입구 문주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되어 시공될수 있음. 단, 인허가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공사 시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추가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단지	공통사항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의 형태,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에리어 DA),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 (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주동의 동출입구,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계획 주동의 경우 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임. 커뮤니티시설의외부입면은석재마감및석재뿜칠혼합마감임.단,외관디자인변경으로인한인허가진행시석재적용부위는변경될수있으며재료의색상및디자인은시공중변경될수있음.
		필로티 내부에 기둥, 벽체 등은 색체 디자인 반영으로 일부 석재 뿜칠이 시공됨.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일부동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빛공해 저감을 위하여 일부 차폐형 식재,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나 세대별로 계획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해당 구조물이나 시설로 인하여 세대의 일조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인허가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공동주택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인명대피공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됨.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르며 조경공간의 개선을 위하여 수경시설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의 OS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어 공용부전력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며,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 및 각도는 향후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각동 필로티 내부 및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가 되며 동별로 설치 여건 및 보관 가능한 개소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보관소 설치로 인하여 일부 통행에 불편 및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3개소(공동주택용 12개소,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는 단지 남측에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통행 시 경관저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함은 각 동별로 설치되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 및 수거장의 규모가 상이함.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 질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단지내 조경시설물, 도로선형, 쓰레기분리수거장, DA 등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가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에 제한이 있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내 가스공급을 위한 별도의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소방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선구간에는 잔디블록이 적용될 수 있음.
		101동 인근 및 104동 하부 필로티에는 어린이 버스 승하차를 위한 드랍오프존 및 대기를 위한 공간이 조성되며 이로 인하여 인근에 통행 불편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계단실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층에는 개폐가 가능한 창호가 설치되고, 이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됨.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의 실외기는 지붕층 및 지상돌출구간, 계단하부, 별도구획공간과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주동의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12동 부근 하부 지하층에는 공동주택용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열교환기실/우수저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이와 연접한 주동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12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개발,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함.
		공용부의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대별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소음, 빛 공해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 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 장애등, 피뢰침, 방공호 및 대공포 진지 군사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주 출입구 및 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음.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소방법규에 맞게 변경 가능하며 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지상주차장으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배수, 에어컨 등)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필로티	104동의 1층, 105동의 1~3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의 필로티 내부계획 및 마감높이는 상이할 수 있으며, 104동 1층 필로티의 경우는 어린이 버스 승하차를 위한 드랍오프존 및 대기를 위한 공간으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문주	문주는 단지 남측 단지주출입구에 게이트형 1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단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단지출입구	당 단지에 총 2개소의 단지 차량출입구(101동과 102동 사이, 104동과 105동 사이)가 있음. 다만, 인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일부 위치 및 형태 및 개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공동주택 주동	101동 북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북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북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천창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동측으로 단지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1동 동측으로 어린이 버스 승하차를 위한 드랍오프존 및 대기를 위한 공간으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1동 남측으로 완충녹지 및 방음벽(높이 4M)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남서측으로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공원과 단지내 동선이 연결되므로, 이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2동 북측으로 티하우스및 외부 휴게공간,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2동 북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천창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동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동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남측으로 단지 차량출입구 및 차량 회차구간이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남측으로 경비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2동 남측으로 완충녹지 및 방음벽(높이 4M)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2동동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2동 북서측으로 단지 지하주차장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북측으로 캐슬리안 센터 및 티하우스, 외부 휴게공간, 수경시설이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3동 북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천창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북동측및 서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동측 및 남서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3동 남측으로 완충녹지 및 방음벽(높이 4M)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북측으로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북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천창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4동 북서측으로 캐슬리안 센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북동측으로 단지 지하주차장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4동 북동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4동 동측으로 단지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4동 동측으로 어린이 버스 승하차를 위한 드랍오프존, 104동 하부 필로티에 대기를 위한 맘스스테이션이 계획되어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4동 남측으로 완충녹지 및 방음벽(높이 4M)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4동 남서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북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북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천창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북동측 및 남측(근린생활시설용)으로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남측으로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저층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5동 남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남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서측으로 단지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5동 북서측으로 단지 지하주차장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북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천창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북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동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6동 동측으로 완충녹지, SEMES(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남동측으로 소공원과의 보행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남측으로 완충녹지 및 방음벽(높이 4M)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106동 남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저층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북측으로 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북측으로 4m 아래에 지하주차장 외벽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동측으로 완충녹지, SEMES(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빛공해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남측으로 주민운동시설, 남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7동 남측으로 단지 지하주차장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7동 북서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북측으로 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8동 북측으로 4m 아래에 지하주차장 외벽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08동 북동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남동측으로 단지 지하주차장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8동 남측으로 유아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8동 남측으로 캐슬리안 센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8동 서측으로 폐기물보관함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북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8동 북동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09동 남동측으로 캐슬리안 센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09동 남측으로 수경시설 및 외부 휴게공간이 설치되며 북측으로 어린이놀이터, 서측으로 외부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0동 북측으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가동으로 인해 단지 전체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0동 북측으로 외부 휴게공간, 남동측으로 수경시설 및 외부 휴게공간, 남측으로 티하우스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0동 남측으로 티하우스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0동 남측으로 단지 지하주차장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

		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0동 남측 및 서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1동 북측 및 서측으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가동으로 인해 단지 전체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1동 북측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DA가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1동 북서측으로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1동 북동측 및 동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1동 동측으로 티하우스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1동 남동측으로 단지 지하주차장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1동 남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2동 북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112동 북동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112동 남측으로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공원과 단지내 동선이 연결되므로, 이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2동 북측 및 서측으로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가동으로 인해 단지 전체세대는 소음, 냄새 등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112동 북측과 서측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각동의 후면에는 소규모 휴게공간(라운지가든)이 조성되며 동별규모, 형태, 시설이 상이하며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는 최종 사업승인도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될 예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전 필요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장, 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 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휀룸 급기 DA가 지상층에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시 휀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추가 혹은 이동설치될 수 있음. 각 동 인근 지상층에는 DA(제연DA포함),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이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길 수 있음.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 등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되며,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주차장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는 단지내 총 2개소로, 단지 101동과 102동 사이 북측에 지상진출입 1개소, 104동과 105동 사이 북측에 지상진출입 1개소 계획되어 있음.
		당 사업장의 지하주차장 지하1층은 택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천정고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지하주차장 이용에 동선간섭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단지 동측 출입구 및 서측 램프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별 주차거리가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출입구의 진입 및 진출차선의 형태 및 개수는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처의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동 저층부 세대는 차량불빛,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동위

		치와 형태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관련공간 계획으로 인해 주동별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제습 및 냉난방을 위한 공용홀 에어컨용 실외기 배치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보행자의 동선간섭 및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3M, 확장주차 폭 2.5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축소될 수 있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12동 부근 하부 지하층에는 공동주택용 발전기실/전기실/기계실/저수조/열교환기실/우수저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계획되어 있고 이와 연접한 주동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12동)의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휀룸에 주차장 환기를 위한 휀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팬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될수 있으며, 인접주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단,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음.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의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 1층 주차장의 일부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음.
		단지 특성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며 주차대수는 아파트 1205대이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으로 7대, 총 1212대(경차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4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 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102~104동,108~110동의 일부 저층세대) 및 보행도로에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는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은 105동 남측에 설치되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경비실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측 차량 및 보행자출입구 2개소와 연계하여 설치됨. 경비실과 주차차단기(차량 출입구)의 위치 및 규모, 개수, 디자인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관리사무소와 작은도서관, 독서실은 104동과 108동 사이 별동 2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로당(시니어클럽)과 어린이집(키즈클럽)은 104동과 108동 사이 별동 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은 104동과 108동 사이 지하1층 캐슬리안센터(홀, 라운지, 실내골프, GX룸, 탁구장,탈의샤워실, 피트니스 등)에 설치되고,이의 접근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계

		단이 지하1층부터 지상2층 시설까지 연결되므로,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카페테리아(카페 및 미니키즈카페)은 102동과 110동 사이 별동 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캐슬리안센터, 카페테리아 등)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사용검사 신청 전 사업주체는 관할 관청과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제반사항(정원,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무인택배보관소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층 각동코어별 1개소씩 설치됨.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단지 주출입구 인근 측면에 경비실이 별동으로 설치됨. 단 경비실의 개수, 주차차단기의 위치 및 규모,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쓰레기보관함 13개소(공동주택 12개소, 근린생활시설 1개소), 자전거보관대 외부설치분 12개소(필로티내 설치분 제외), 외부 드라이에어리어(DA) 7개소, 천창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와 형태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단, 분양이후 현장여건 및 인허가절차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외부설치분은 추가설치될 수 있음
단위세대	공통사항	단위세대는 대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식당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와 현관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인허가 도서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분양세대(59A㎡, 59B㎡, 59C㎡, 84A㎡, 84B㎡, 84C㎡, 111㎡)로 구분되어 있음
		같은 주동 내 세대간 층단차이 발생구간의 외부 노출세대는 단열재 적용에 의하여 상층부세대와 하층부세대의 사용면적이 상이할수 있음.(법적면적은 동일함).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 우물천장의 형태 및 크기는 천정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거실 우물천정의 형태 및 크기, 디자인, 디테일 등은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음.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 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 및 현관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 몰딩 및 커텐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측 벽체에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음.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벽체판넬,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의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혹은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59A㎡, 59B㎡, 59C㎡, 84A㎡, 84B㎡, 84C㎡, 111㎡타입은 별도의 대피공간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도록 계획하여 비상시 아래층 세대로 대피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단, 피난기구는 상하층 좌우 교차되어 설치됨으로 같은 타입이라도 층별/동별 그 위치가 상이함.
	104동 1, 2호라인(특히101, 201, 202호), 105동 3, 4호(특히 103, 104, 203, 204)의 경우,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된 문주에 의해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차량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02동 4호라인(특히 104, 204, 304호), 105동 4호라인(특히 104, 204, 304호), 107동 1, 2, 3호라인(특히 101~103, 201~203, 301~303호), 108동 1, 2호(특히 101~102, 201~202, 301~302호), 110동 1, 2, 3호라인(특히 101~103, 201~203, 301~303호), 111동 1, 2호라인(특히 101~102, 201~202, 301~302호)의 경우, 지하주차장 램프출입구가 설치되어 차량의 수시출입에 따른 소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세대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및 견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바닥/벽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으며, 나누기 디자인 및 줄눈 두께, 접합방식, 외벽에서 이격거리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세대 내부의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텐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내경치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공품목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함.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확장 미선택 세대의 경우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 상판(MMA)이 시공되고 주방벽 악세사리가 확장시와 상이하게 적용되며 주택형별 주방상판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함.
	84A㎡, 84B㎡, 84C㎡, 111㎡ 공용/부부욕실은 확장 시 욕조형 또는 샤워부스형으로 욕실 구성을 선택할 수 있음. 선택형에 따라 제공되는 욕실 액세서리가 상이하며, 벽타일 밑 바닥타일의 디자인은 같으나 타일나누기가 선택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됨

		현관중문(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9C㎡, 84C㎡ 침실1 드레스룸은 확장시 수납형과 홈오피스형 중 선택가능하며 선택형에 따라 드레스룸 도어 설치 여부 및 제공 가구가 상이함.
		84A㎡ 안방 드레스룸은 확장시 대형 드레스룸으로 제공되며, 유상옵션으로 홈오피스형 드레스룸(3연동중문+서재형가구+드레스룸)으로 선택가능함.
		111㎡ 안방 드레스룸은 확장시 대형 드레스룸으로 제공되며, 유상옵션으로 홈오피스형 드레스룸(3연동중문+서재형가구)으로 선택가능함.
	가구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아일랜드 식탁 포함)
		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주방가구 상부장 뒷판 하부 마감되지 않은 절단면 노출은 하자 사유가 아님. 상기 사항에 대해 입주자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마감시행요청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하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현관 신발장, 복도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람.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퓨어패키지(의류관리기+살균기+수납가구) 는 84A㎡, 84B㎡, 84C㎡, 111㎡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타입별 가구 크기 및 적용부위가 상이함. 84B㎡, 84C㎡ 퓨어패키지 선택시 복도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수납공간의 크기 및 깊이가 상이함. 111㎡ 퓨어패키지는 침실3 알파룸+복도팬트리 유상옵션 선택시에만 추가로 선택가능하며, 퓨어패키지 선택시 복도 팬트리 가구의 수납공간이 축소되어 설치됨.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창호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사양은 인허가 진행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창호의 프레임에는 도장이 적용될 예정임.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방충망 개폐방식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하며, 루버외부에 세대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됨.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창호는 투시형난간이 적용된 PVC 이중창이 설치되며 투시형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는 투시형난간이 적용되며 PVC 단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투시형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세대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코너부위 디테일 및 사양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발코니 및 실외기실, 테라스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 구간의 바닥단차 및 적용위치는 사용성을 위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천정에 설치되는 전동빨래 건조대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실외기 도어 개폐시 간섭은 하자 사유가 아님. 상가사항에 대해 입주자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개선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세탁기 등을 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전기/설비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부스 및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 및 배관 점검용 점검구가 설치됨.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욕실 세면대, 양변기, 악세사리, 주방개수대, 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세대 주방 및 화장실 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냉매매립배관(거실, 안방 각 1개소)이 설치되지 않음.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의 비확장 부위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오배수배관은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유지보수 방식이 층상배관방식과 상이함.(오배수 배관 유지보수는 아래층 욕실 천정 내부에서 가능함)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입주후 입주자의 식탁의 배치와 관계없이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입주 후 식탁등의 설치방향을 변경할 수 없음.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스피커는 별도 구매품목이며 스마트홈IoT 가전연동은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서비스는 무상지원됨.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함.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 주광색 등으로의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이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실제 본공사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유상옵션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할 수 있음.
		별도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

	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 및 제품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계약서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제품을 지정불가 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추후 옵션 계약시 해당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져, 천정몰딩 및 커텐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이 설치되며, 확장 미선택 시 주방벽은 국산타일(300*600),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MMA)이 시공되고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주방스타일업(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 와이드싱크볼) 옵션 미선택시 주방벽은 국산타일(300*600)이 시공되며 일반형 싱크볼이 설치됨.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
	거실 스타일업 패키지 유상옵션 미선택시 메인 거실 아트월1면을 제외한 나머지 거실 및 복도 벽은 거실벽지로 마감되며,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복도아트월 타일적용 길이 및 천정 몰딩위치, 문선 두께, 벽면 접합 디테일, 복도폭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함.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현관중문(유상옵션)은 추후 하자보수를 위해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마감 선택 시 강마루 및 현관 디딤판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접합부 디테일 및 나누기도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자재의 특성상 타일의 색상 및 패턴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됨.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선택시 수납 효율을 높여주는 빌트인 펜트리가 같이 제공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됨.

IX 기타사항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 조건을 제8조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채택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네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 규정에 따라 설계
	조명설치(다목)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원포비스(주)	㈜지여이앤씨	㈜지여이앤씨
감리금액	3,355,000,000	589,416,968	380,600,000	207,900,000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22020-101-0002600 호	**381,009,3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보증 주요 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토지신탁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포유젠㈜과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신영부동산신탁㈜ 및 시공사 롯데건설㈜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합니다.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신영부동산신탁㈜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5.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 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자가 부담한다.
6. 분양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회사
상호명	신영부동산신탁(주)	(주)포유젠	롯데건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1804호(논현동, 거평타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9(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7126835	204611-0020065	110111-0014764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0,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견본주택

■ 홈페이지 : 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 1566-198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